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정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 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란에서는 관련된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등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판례를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뇌혈관질환⑥

뇌출혈 고혈압

- 서울고법 1993. 3. 19. 선고.92구9731 판결
- 법 관 김학세, 이형하, 고영한
- 원심판결

- 참조조문 산재법 제3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1274 판결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직업상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원인 물질이 있는 작업장에



되시기까지 원액2과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실, 소외 회사 비스코스레이온공장이 인조견 제조를 하면서 거치는 비스코스공정에서 사용되는 이황화탄소는 이황화탄소중독증을 일으키는 액체인 사실, 위 회사는 그 소속 방사과를 이황화탄소에 폭로될 위험이 높은 유해부서로 보고 있으나, 위 망인이 근무했던 원액2과는 이황화탄소에 폭로될 위험이 적은 비유해부서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 원액2과에서 맡고 있는 작업내용은 콘크리트 단일건물의 5층에서 펄프(셀룰로오스) 원료를 유입시켜 4층 분쇄실에서 펄프를 분쇄하고 3층 노성실에서 가성소다로 노성시켜 알칼리셀룰로오스로 만든 다음 2층 유화실(찬실)에서 위 알칼리셀룰로오스에 1일 600리터가량의 이황화탄소원액과 황화수소를 첨가시켜 찬테이프를 만들고 1층 필터실에서는 찬테이프에 가성소다를 용해 혼합시켜 비스코스를 만든 후 이물질물 여과하는 일관작업의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특히 위 2층 유화실에서는 작업자 2인이 1조가 되어 8대의 유화기를 모두 가동시켜 약 1시간에 1번씩 약 15분간 탱크뚜껑을 열고 수동으로 1일 4시간씩 원액을 붓고 유화실 내부에 남아 있는 찌꺼기를 갈퀴 등을 이용하여 긁어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고 더욱이 호흡용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은채 작업을 하였던 관계로 이 과정에서 고농도의 이황화탄소가 발생비산하고 여기서 발생한 이황화탄소에 쉽게 폭로될 뿐만 아니라 유화기 내부 청소작업시에도 직접 폭로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2층 유화기에서 발생한 이황화탄소가 2층 천정의 개구부를 통하여 3층으로 올라오는 관계로 3층 노성실 근무자는 평상시 상당한 량의 이황화탄소에 폭로되고, 더구나 3층의 캔 속에서 노성된 펄프를 2층

유화실로 보내기전에 2층 유화실의 탱크재료투입구가 개구부쪽으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성실 작업자는 3층 바닥의 개구부 작상부로 상체를 기울여 머리를 넣고 확인한 후 2층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이황화탄소에 폭로될 가능성이 높은 사실, 또한 1층 필터실의 필터해체작업이나 천으로 재조립 작업시에도 이황화탄소가 비산하여 작업자에게 폭로되는 사실, 위 망인은 위 입사시부터 1981.까지 주로 원액2과 노성실에서 근무하였고 1주일에 2일 이상씩 필터실에 파견근무하였으며 그 후에는 원액2과의 유화실 근무를 거쳤고 필터실 근무당시 퇴직한 사실, 소외 회사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중 현재까지 수십명이 이황화탄소중독증에 이환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그 중에는 원액2과와 같이 비유해부서로 분류된 부서근무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위 망인은 소외 회사 근무도중 고혈압과 말더듬증세가 나타나는 등 건강이 악화되어 1983. 9. 20. 퇴직한 후 집에서 치료를 하였으며 퇴직당시의 수축기의 혈압이 170mmHg였던 사실, 위 망인은 퇴직시 수령한 퇴직금을 치료를 위하여 소비하여 버리고 1984. 경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하여 2년간 근무하였으나 계속하여 말더듬 등 발음장애, 손발저림, 불면증 등으로 시달리다가 1986.말에는 도저히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집에서 요양한 사실, 그때부터 약 1년간 요양한 결과 다소 증세가 호전되어 1987.말에는 다시 생계유지를 위하여 건물경비원으로 취업하는 등 경미한 일에 종사하던 중 1990. 7.경 사지마비증세로 쓰러졌고 심한 발음장애로 발전한 사실, 위 망인은 그 당시 마침 종전에 위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도 비슷한 증상으로 직업병을 인정받고 치료를 받는다는 이야



의 근무시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질병에의 이환여부, 질병의 일반적 증상의 특징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위에서 인정된 여러 사정들 즉, 망인이 소외 회사 입사당시 혈압이 정상범위에 속하는 등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소외 회사 근무시 이황화탄소에 폭로될 위험이 높은 원액2과 작업에 6년내내 종사하여 왔으며,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동료근로자중에도 이황화탄소중독으로 판정된 사례가 있고, 위 망인에게 회사 퇴직전부터 사망당시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고혈압, 손발저림, 발음장애 등의 임상증상이 의학계에 보고된 이황화탄소중독환자의 일반적 임상증상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위 망인 사망후 실시된 사체부검 및 조직검사결과 밝혀진 관상동맥경화증과 사구체경화증이 의학계에서 공인된 이황화탄소중독환자의 일반적 병리기전과 일치하는 점 및 이황화탄소에 일단 중독되어 생화학적 변화가 시작되면 이황화탄소폭로가 중단된 이후에도 혈관병변이 계속 진행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망인의 고혈압, 관상동맥경화증 및 사구체경화증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망인의 고혈압 등이 위 회사 근무당시 원액2과에서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이황화탄소에 중독되어 발생된 증상이라고 추단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망인은 위 이황화탄소중독에 의한 고혈압이 악화되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 등 지급청구부결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 등 지급청구부결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